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2
------	-------

제출년월일 : 2015.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화를 정립하여 올바른 재활용 문화조성 및 재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확하게 함(안 제2조의2)

나.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조제2호~제5호)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다. 기금운용관 조정(안 제6조제2항)

-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복지교육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변경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
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5. 2. 12. ~ 2015. 3.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5년으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 이를”을 “용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등 그 밖의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4.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

5.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제6호(중전의 제3호) 중 “밖의 재활용품”을 “밖에 재활용”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마포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본인”을 “위원장은 위원 본인”으로, “심의에서”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으로”를 “청소행정과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운영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5년</u>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17년 12월 31일</u>까 <u>지</u>로 ----- ----- ----- -----.</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u>용도에</u> 이를 사용한다.</p> <p>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그 밖의 <u>소요비용</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조(기금의 용도) ----- ----- <u>용도에</u> -----.</p> <p>1. ----- ----- <u>등 그 밖의 비용</u></p> <p>2. <u>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u></p> <p>3. <u>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u></p> <p>4. <u>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홍보</u></p> <p>5. <u>제5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u></p> <p>6. -- <u>밖에 재활용</u> ----- ----- -----.</p>
<p>3. 그 <u>밖의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u></p>	<p>-----</p>

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

----- 마포구 -----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밖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 차례-----

-----.

⑥ -----

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5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5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생략)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교육국장

----- 위
원장은 위원 본인 -----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적위원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회의) ① -----
----- 위
원장이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5(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에게 -----

-.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청소행정과장으

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

③ ----- 재무관-----

-----.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기금운영계획-----

-----.

② ----- 기금운용 계획안과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재활용정거장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101,793천원
 - 산출근거 : 170원 × 119,756세대 × 5회
 -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금 14,400천원
 - 산출근거 : 50,000원 × 24명 × 12월
- 관련 조문 : 조례 제4조~제5조(안) (기금의 용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청소행정과 박명숙
연락처	02-3153-9223